

의안번호	2207012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5.1.16
추 계 번호	24B6313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의2 신설 (기업도시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	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제2항) 1. 기업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.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.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0조의2 신설 (기업도시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런데 기업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사업내용, 운영방식 및 인력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에서 규정한 각 호1)의 사업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센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다만, 현재 개발 중인 기업도시는 총 4개 지역(충주, 원주, 태안, 영암·해남)이며 기업도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기반설치 지원 등 [참고자료 1]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
 - 개발구역 지정 완료 기업도시(아래 표 참고)
 - 개발 진행 중: 태안, 영암·해남
 - 준공 완료: 충주('12년 준공), 원주('19년 준공)
 - 개발구역 미지정 기업도시(기업혁신파크*): 거제, 당진, 춘천, 포항
 - * 지자체·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'24년 선정

[표 1] 개발중인 4개 기업도시의 유형별 분류

유 형	주 된 기 능	소관부처	해당 기업도시
산업교역형	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	국토교통부	없음
지식기반형	연구·개발 등 Science-Park형		충주, 원주
관광레저형	관광·레저·문화 위주의 도시	문화체육관광부	태안, 영암·해남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(2025.1)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1. 기업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
 2.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
 3.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
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[참고자료] 기업도시 개발관련 국가 지원사업 현황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1.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국가적 · 제도적 지원

□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(법 제25조)

- 조세 감면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)
 - → 법인세 3년 50%, 2년 25% 감면, 지방세는 50%범위 내 조례 위임
 - ①개발부담금 면제, ②농지보전부담금 감면(농업진흥지역 밖 50%), ③대체초지조성비 감면(50%), ④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(준보전산지 50%), ⑤교통유발부담금 면제, ⑥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면제

□ 국·공유재산 임대료 20% 범위 내 감면 (법 제26조)

□ 국·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(법 제27조)

- 국·공유지 해당 개발계획 목적 외 처분 불가
-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국·공유지 처분 가능
- 국·공유재산 매도 금액 10~20년 범위 내 연단위 분할 상환 가능

□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특례 (법 제29조)

- 관할 시장·군수가 사업 승인 및 승인 후 시장·군수에게 영업 등록(체육시설법: 시·도지사)

□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(법 제30조)

□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(법 제33조의2)

-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계획법 규정의 100분의 150의 범위 내 조례 위임

- 개발구역 일부 또는 전부 도시혁신구역 지정 가능

□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(법 제34조)

- 개발구역 주 진입도로 건설비에 대한 국고 보조(50%)
- 관광 중심 기업도시 기반시설 등 건설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 혹은 대여

2.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수요 확보를 위한 지원

□ 신설·창업기업 조세 감면 및 국·공유지 임대료 감면 (법 제26조)

- 조세 감면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)
 - → 법인세 3년 100%, 2년 50% 감면, 지방세는 50%범위 내 조례 위임
- 국·공유재산 임대료 20% 범위 내 감면

□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(법 제31조)

- 입주기업 종사자, 교육기관 교원 및 종사자,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가능

□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(법 제34조의2)

- 개발계획에 규제특례계획이 포함된 경우 국내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선택적 규제 특례 적용
 - 규제 특례 대상 법률: 건축법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, 도로교통법, 공정거래법, 박물관미술관법, 초·중등교육법, 출입국관리법 등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